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04. 11. 23)

1. 심사 경과

- 가. 2004. 11. 15 : 사천시장 제출
- 나. 2004. 11. 15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54호)
- 다. 2004. 11. 23 :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제안 이유

- 동절기 근무 1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준수와 민간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무원이 솔선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 공무원은 일과 중 민원처리 전화응대 등으로 업무집중이 잘 되지 않아 민원이 내왕하지 않는 시간대에 각종업무의 기획과 점검 및 연찬을 통하여 자기발전 업무증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우리시의 경우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표준정원보다 많은 인력운영으로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므로 부족인력의 해소를 위해서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204곳(82%)이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였고 나머지 46곳 중 22곳이 11월중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며,
- 정부의 방침도 조례개정을 11월말까지 마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 특별교부세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배제 등 행·재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바 정부의 방침대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 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함.
 - 퇴근시간 : 오후 5시 ⇒ 오후 6시

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5.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던 것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4. 7. 1부터 월 2회 토요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절기(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근무 하는 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행자부의 개정표준안을 기준으로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4. 6. 18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음 .
-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동절기 일몰 후에는 방문민원인의 수가 적고 동절기에 1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 하는 안에 대하여는 당초대로 오후 5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여타 안건도 일부 수정하여 2004. 7. 29 의결한 바 있음.
- 현재 지방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상황을 보면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204개 자치단체가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였고 나머지 46개 자치단체는 오후 5시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46개 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는 11월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경남도의 경우 21개 자치단체 중 경남도를 비롯한 9개 자치단체는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였고, 나머지 12개 자치단체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시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의회 제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

4.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위원	질 의 내 용	답변자	답 변 내 용
이삼수 위 원	○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복무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자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정하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는 것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지 않는 사례임.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도 오후 6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만일 행자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총무과장 김 영 고	○ 이 자료는 행자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내용임. 우리시는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원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약 8억5천만원 정도의 역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가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부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함. 따라서 중앙부서의 지시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최갑현 위 원	○ 행자부의 권고이후 도내 시·군중 에서 오후 6시까지로 조례를 개정한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여타 시·군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 영 고	○ 현재 하동군이 조례개정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시·군이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이문상 위 원	○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난번 조례개정시 심사숙고 하여 근무시간을 오후 5시로 정하여	총무과장 김 영 고	○ 주 5일 근무가 전면 시행되면 주 35시간밖에 되지 않음.

질의위원	질 의 내 용	답변자	답 변 내 용
	운용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6시까지 근무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차라리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법에 따라 시행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이라고 했는데 만약 토요일 전체 휴무가 되면 법이 또 개정되어야 하지 않는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그래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주40시간이 되는 것임.

5. 토론 요지

- 시장으로부터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요구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검토결과 동절기에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무시간을 오후 5시하도록 7. 29 우리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으나
-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이어 우리시도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야 민원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일부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 음